##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 早調査 에 關 む 條 例 中 改 正 條 例 (案)

議 案 4-72

發議年月日: 1994. 9. 28

發 議 者:李善鍾 議員外 6人

#### 1. 提 案 理 由

 地方自治法('94. 3. 16 法律 第4741號) 및 地方自治法 施行 令('94. 7. 6 大統領令 第14317號)이 改正됨에 따라 法令에 符合되게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를 整備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 가.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를 本會議에서도 직접 행할 수 있도록 함(案 第2條 第1項, 第3條 第3項)
- 나. 行政事務監査期間을 現行 "5日 以内"에서 "10日 以内"로 延長함(案 第2條 第2項)
- 다. 監査 또는 調査委員會에 小委員會나 班을 構成할 수 있도록 함(案 第3條의 2)
- 라.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中에서 地方公企業法 제79조의 2의 規定에 의하여 市가 4분의 1 이상 出資 또는 出捐한 法人을 追加시킴(案 第5條 第1項)

- 마. 監査對象事務에 國會가 직접 監査하기로 정하지 않은 國家 事務를 포함시킴(案 第6條 第1項)
- 바. 證言陳述과 關聯된 對象者중 事務에 關係되는 一般人을 包 含시킴(案 第9條)
- 아. 證人의 宣誓方式과 證人保護에 관한 事項을 具體的으로 정함(案 第9條의 3, 第9條의 4)
- 자. 出席·證言을 要求받은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 니하거나 證言 또는 陳述을 拒否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함(案 第17條)
- 아. 虛僞로 證言한 者에 대하여 告發할 수 있도록 함(案 第18條)

#### < 關聯法規 >

- · 地方自治法 第36條, 第37條
- ・ 地方公企業法 第79條의 2
- · 刑事訴訟法 第157條
- ・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等에 關한 法律 第5條
-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6條, 第17條, 第17條의 2, 第17條의 3,
  第17條의 4, 第17條의 5, 第17條의 10, 第19條의 2, 第19條의 3

##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의결로" 다음에 "본회의에서 행하거나"를 삽입한다.

제2조 제2항중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본회의의 의결로" 다음에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또는"을 삽입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 (소위원회등)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 또는 반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당해 지방자치단체
-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 행정기관
- 4.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 6.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6조 제1항중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를 "사무와 대전직할시 및 시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을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으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를 "관계공무원 또는 그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 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 2 (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방법) ①법 제36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에 대하여 시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 ②법 제36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가 감사를 실 시한 자치구의회에 대하여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 3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대행할수 있다.
  - 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 4 (증인의 보호) ①시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시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5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과태료 부과) ① 제9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 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절차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18조(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1 ]

가.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중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〇〇년도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 년 월 일

대 전 직 할 시 의 회 의 장 ( ○ ○ ○ 위원회 위원장 )

#### 나. 증인 선서서

# 선 서

본인은 대전직할시의회(〇〇〇〇위원회) 〇〇년도 행정사무 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병 :

선 서 자: (서명 또는 날인)

## 신・구조문대비표

현 <b>행</b>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의희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	제2조(감사) ①
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
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거나, 감사특별위원회
②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	@
특별위원회(이상"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되	
매년 정기회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한다.	10일 이내
③ ~ ⑥ (세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 ② (생 략)	제3조(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외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③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 조사를 시행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	조사를 행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	
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	
다.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 2(소위원희등) ①본희의, 감사 또
	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
	성할 수 있다.
	②세1항의 소위원회 또는 반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	
다.	<del></del> ,
1. 본청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
한 공무원교육원, 소방서, 농촌지도	한 시 소속행정기관
소등 직속기관과 사업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
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	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사 및 지방공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
	한 지방공사 · 공단외의 출자 · 출연법인증
,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본회의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현 \*J 개 정 솬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 회계 · 재 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의무) ①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 사무와 대전직할시 및 시장이 위임 실시한다.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 하여 실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감사 ·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 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 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보조기관의 ----- 관계 공무원 또는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 의견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 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는자를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 ----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4) 략)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세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정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
	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Service Service Control Control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기 아니할 경
	우의 게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
	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건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
	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세9조의 2 (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 방법) ①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에 대하여 시의회가 행하
	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규정
	을 준용한다.
	②법 제36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자치구의회에 대
190	하여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 3 (증인의 선서) ①외장 또는 위원
	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
	야 하며, 선서하기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	
	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된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증인이 선기	
	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대해	
		할 수 있다.
	②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 4 (증인의 보호) ①시의회에서 증	
		언 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등
		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니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들 요구힐
		매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병
	송 ·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	
	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의회에서 중인·진술한 중인·참고인	
	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	
		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 5 (대리출석·답변의 봉지) 시장은

현	ન્યુ	개 정 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기	세 힞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	회의
		또는 그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장	0/2
		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11조(공개의 원칙	l) 감사 또는 조사는 공	제11조(공개의 원칙)	
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 다만, 본회의 또는 감/	<b>사</b> ·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	
〈신 설〉	9	제17조(과태료 부과) ①제9조 제1항의 <u>.</u>	o
, C 5)		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4)
		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	do inc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중인 1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치
	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신 설〉		제18조(고발) ①외회는 이 조례에 의하	ोव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	七
¥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외로 한다.	×
제17조( <del>준용</del> 규정)	(생략)	제19조(준용규정) (현행 제17조와 같음	-)

#### [ 별표1 ]

가.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중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9 년 월 일 대 전 직 할 시 의 회 의 장 ( ( ) ( ) ( ) 위원회 위원장 )

## 나. 증인 선서서

# 선 서

본인은 대전직할시의회(〇〇〇〇위원회) 〇〇년도 행정사무 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서명 또는 날인)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報告書

1994. 10.

大田直轄市議會運營委員會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於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報告

1994年 10月 5日

## I. 審 査 經 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4年 9月 28日 李 善 鍾 議員外 6人

나. 回附日字: 1994年9月29日

다. 上程日字:第3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

次 運營委員會('94. 10. 5) 上程,

審議, 議決

## Ⅱ. 提案說明 要旨(提案說明者:金 容 濬 議員)

1. 提案理由

地方自治法('94. 3. 16 法律 第4741號) 및 地方自治法施行令('94. 7. 6 大統領令 第14317號)이 改正됨에 따라 法令에 符合되게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를 整備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가.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를 本會議에서도 직접 행할 수 있도록 함 (案 第2條 第1項, 第3條 第3項)

- 나. 行政事務監査期間을 現行 "5日 以內"에서 "10日 以內"로 延長함(案 第2條 第2項)
- 다. 監査 또는 調査委員會에 小委員會나 班을 構成할 수 있도록 함(案 第3條의 2)
- 라.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中에서 地方公企業法 제79조의 2의 規定에 의하여 市가 4분의 1 이상 出資 또는 出捐한 法人을 追加시킴(案 第5條 第1項)
- 마. 監査對象事務에 國會가 직접 監査하기로 정하지 않은 國家 事務를 포함시킴(案 第6條 第1項)
- 바. 證言·陳述과 關聯된 對象者중 事務에 關係되는 一般人을 包含시킨(案 第9條)
- 아. 證人의 宣誓方式과 證人保護에 관한 事項을 具體的으로 정함(案 第9條의 3, 第9條의 4)
- 자. 出席·證言을 要求받은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證言 또는 陳述을 拒否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함(案 第17條)

##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專門委員:韓 義 鉉)

- 本 案件은 上位法令인 地方自治法과 地方自治法 施行令이 一部 改正됨에 따라 이에 符合되도록 整備하려는 것입니다.
- ο 主要内容은
- 첫째로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를 지금까지는 常任委員會나 特別委員會에서만 施行하고 있었으나, 이를 本會議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하고 小委員會나 班을 構成하여 運營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事案에 따라 伸縮性있게 對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둘째로 行政事務監査 期間을 現行 5日에서 10日로 延長함으로써 監査를 내실있게 遂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셋째로 監査 및 調査 對象中에 市가 1/4이상 出資 또는 出捐 法人을 追加시키고, 國會가 직접 監査하기로 정하지 않은 國家事務도 포함시키므로 監査對象의 폭을 확대시켰습니다.
- 넷째로 證言・陳述과 關聯한 對象者中 事務에 關係되는 一般人도 包含시키고 出席・證言을 要求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證言 또는 陳述을 拒否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하며, 虛僞로 證言한 者에 대하여는 告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섯째로 證人에게 證言을 要求할 때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내용의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였으며

- 끝으로 證人・參考人이 비공개를 要求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一部 또는 全部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議會에서 證言・陳述한 證人・參考人이 그 寫本을 要求한 때에는 議長의 承認을 얻어 交付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證人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地方議會에서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를 施行함에 있어 法規上의 根據가 없어, 議會에서 出席·證言 그리고 陳述要 求를 拒否

하거나 虛僞로 證言을 하여도 制裁措置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地方議會의 監査權 및 調査權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本 條例改正案을 통하여 늦게나마 監査期間이 延長되고 監査對象이 擴大될 뿐만 아니라 罰則이 制定됨에 따라 本格的인 地方

自治時代를 맞이하여 地域住民의 代表機關인 地方議會가 名實 相符한 監査權 및 調査權이 確保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本 條例案의 上位法規인 地方自治法과 地方自治法施行令等을 면밀히 檢討해 본 결과 별다른 問題點이 없는 것으로 判斷됩니다.

Ⅳ. 質疑 및 答辯 要旨:省 略

V. 討論要旨:省略

VI. 審 査 結 果 : 原 案 可 決

Ⅷ. 少數意見 要旨 : 없 음

WII.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